

# 코로나19 대응지침(3-2판) [인공신장실용]

(대한신장학회/대한투석협회, '23.09.01)

○ '대한신장학회'와 '대한투석협회'는 코로나19 감염(COVID-19)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고자 **코로나19 감염(COVID-19) 대응지침(인공신장실용)**을 마련

※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,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변경

**1. 대상** :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

## 2. 목적

- 1) 코로나19 위기단계가 '심각'에서 '경계'로 하향되고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서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으나,
- 2) 유지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2-3회 외래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'자가격리'에 제약이 따르고, 투석 환자들은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쉽고,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,
- 3) 일상회복 속에서 투석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하고자 함

## 3. 사례정의

- 1) 확진환자 :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자

\* 검사기준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

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결과 양성

\* 주요 임상증상: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

#### 4. 인공신장실 준비 사항

- 1)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,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도록 교육한다.
- 2) 손소독제를 인공신장실 입구에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한다.
- 3) 가급적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을 준비한다.  
\*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 등
- 4) 대기실에서의 환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, 인공신장실 내 취식을 금한다.
- 5)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 교육을 시행한다. 예약 시 확진환자 접촉력, 임상증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감염이 의심된다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말고,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.
- 6)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안내한다.
- 7) 체온이 37.5°C 미만\*이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입실한다.
- 8)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나 방문객을 통제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한다.

#### 5. 확진환자 대응 방법

- 1) 확진환자의 경우 음압이 유지되는 격리병실 또는 격리 투석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다.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음압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환기가 유지되는 경우 기존 투석시행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
- 2)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**입원 우선대상**으로 고려하며, 일반 환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병실에 입원할 수 있다.

##### [ 확진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]

-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
- 호흡곤란(일상생활 중에도 숨참)

-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°C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
- 조절되지 않는 고칼륨혈증(K >6.0) 이나 대사성산증(pH <7.2 또는 total CO<sub>2</sub> <10)
- 면역억제제 투여 중이거나 항암치료 중인 환자
- 그 외 의료진의 판단 하에 입원이 필요한 자  
(요독증상, 영양실조,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또는 당뇨)

- 3) 확진 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기관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동한다.
- 4) 확진 후 첫 투석 전 확진일, 증상 발현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고 필요시 일반혈액검사, 생화학검사,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다.
- 5) 확진 된 외래 투석 환자는 매일 혈압, 체온, 산소 포화도, 증상을 검토하여 입원 우선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,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여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한다.
- 6) 의료진은 확진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(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KF94 또는 N95 마스크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를 착용한다.
- 7) 환자 접촉 전·후, 개인보호구 탈의 후 손위생을 준수한다.
- 8) 투석장비는 사용 후 제조사의 권고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.
- 9) 투석 시행 후 절차에 따라 청소·소독하고 소독 후 최소 1시간 환기(시간당 6회 환기 기준)한다.
- 10) 혈액투석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(의료기관 내 이동 최소화)하고 밀폐하여 처리한다.
- 11) 혈액투석을 실시 중인 확진환자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(기간)

- 경증 확진자로 외래에서 투석하는 경우, 격리 해제시점은 '검체채취일'로부터 5일이다.
-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점은

'검체채취일'로부터 7일이다.

- 단,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.

12) 격리해제 후에는 다른 환자와 같이 투석을 시행할 수 있다. 격리해제 시점에서 PCR 음성 확인은 불필요하다.

※ 참고사항

-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 (지자체용) (제14판)」
-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판)」
- 「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(제3판)」